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철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박철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남창진,
박수빈, 박승진, 봉양순,
송도호, 오금란, 유정희,
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최기찬,
최민규, 한 · 신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,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. 이에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켜, 그 설치와 관리·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‘스마트쉼터’를 추가함(안 제2 조제5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횡단보도 쉼터, 스마트쉼터(횡단보도 쉼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 · 그 밖에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삭 제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횡단보도 <u>쉼터</u> (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)	5. ----- <u>쉼터, 스마트쉼터</u> (횡단보도 <u>쉼터</u> 및 <u>스마트쉼터</u> 설치· <u>운영</u> -----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'스마트쉼터'를 추가(안 제2조제5호)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